

제1편
석탄산업 발전과
공사의 발자취

제1장 한국의 석탄산업 100년

제1절 석탄산업의 태동

제2절 일제의 자원수탈

제3절 광복과 국영개발

제4절 석탄산업 중흥시대

제5절 주유종탄 정책

제6절 에너지위기 극복

제7절 석탄산업 합리화

제1절 석탄산업의 태동 (개광~1930)

1. 석탄산업의 기원

가. 19세기말 최초로 채굴권 허가

우리나라의 근대적 석탄개발은 19세기말 러시아인에 의해 시작되었다.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일으키자, 고종은 거처를 러시아 공관으로 옮기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조선의 각종 이권을 독차지하였다.

그런 와중에 1896년 4월 러시아인 니시첸스키(Nisichensky)가 함경도 경성과 경원지방의 석탄채굴권을 취득했다. 왕실이 최초로 석탄채굴을 허가한 것으로 이를 국내 석탄산업의 효시로 본다. 1868년부터 근대적 채탄이 이뤄진 일본보다는 30년, 1875년 탄광개발에 착수한 중국보다는 20년 늦은 출발이었다.

하지만 이전에도 석탄 생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석탄을 사용하여 왔고 1800년대에 이르러서는 원시적인 채집에서 탈피해 채굴작업을 업(業)으로 삼는 이도 생겨났다. 1885년 평양감사가 평양 인근의 양단탄전에 대한 개발권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아 국고 수입으로 삼은 예가 있고 1891년에는 왕실이 영국으로부터 경비정을 사오기 위해 평양탄전 채굴권을 담보로 독일 마이어(Mayer)사의 세창양행으로부터 은 10만냥을 빌리기도 했다. 그러나 생산량이 미미하고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대적 개발로는 보지 않는다.

왕실은 1885년 5월, 최초로 미국인 모스에게 운산금광 채굴권을 허가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영국 일본 등 열강에도 광산개발권을 허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왕실의 개발권 허가는 1906년 『광업법』이 제정되며 소급하여 광업권 등록으로 연계되었다. 따라서 1885년 운산금광의 허가를 '광업의 기원'으로, 1896년 경성과 경원지방의 석탄채굴권 허가를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기원'으로 본다.

나. 최초의 개발 탄광 평양광업소'

석탄 채굴권의 취득은 경성과 경원지방이 먼저였지만 실제로 개발에 착수한 것은 평양광업소가 최초였다. 1903년 1월 궁내부 내장경 이용익은 프랑스 용동상회(龍東商會)와 평양 사동탄광에 대한 합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용동상회는 평양탄전 개발을 위해 프랑스 기술자 3명을 채용했고, 한국인과 중국인을 광부로 고용했다. 생산된 석탄의 대부분은 중국인에 의해 중국 상동지방으로 수출되었으며 프랑스는 군함용으로의 사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료를 본국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인에 의한 개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왕실에 대한 납부금이 기

〈이용익과 용동상회간 합동개발계약의 주요 내용〉

- 이용익(내장원경)이 출자한 2만2천 원(元: 중국 화폐단위)으로 '롱동(용동회사)'과 기사 '뀌빌 예'는 각종 기기를 구매하여 곧 *조전(造磚)한다.
- 내장원경의 명을 받아 롱동은 평양에서 생산된 석탄과 전탄(轉炭)을 판매하고 매장 예상지 역에 대한 탐사를 실시한다.
- 롱동은 이 석탄 및 전탄을 청진, 상해, 나가사키(長崎), 고오베(神戶), 요코하마(橫濱) 등 각국 항구에 수출하고 매탄가의 6/100을 비용으로 사용한다.
- 내장원에서는 저탄장에 관원을 파견하여 감독하되 매탄은 롱동에게 전임토록 한다.
- 내장원에서 금전이 필요한 때에는 저탄을 담보로 납전(納錢)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 가능하다.
- 롱동이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프랑스 공관에 연락하여 제반 사무를 제재한다.

주) 조전(造磚): 평양 인근에서는 벽돌모양의 연탄이 제조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연탄 제조로 추정된다.

대 이하로 부진하고 또 산림벌채, 평양성과 훠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개발 2년만인 1905년 2월에 채굴이 중지되고 4월에는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용익과 프랑스간 계약해지의一面에는 당시 한반도 자원의 독점을 노리고 있던 일본의 견제가 작용했다. 러일전쟁 직후 일본 재정고문으로 와있던 메가다(目賀田)는 "수익금의 일부를 왕실에 바치라고 되어있는 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계약해지를 종용했고, 여기에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슨(Stevenson)이 동조하여 급기야 계약 파기에 이른 것이다.

(주)스티븐슨(Stevenson): 친일 미국인으로 후일 장인환 의사에게 피살

계약해지 후 평양탄광의 운영권은 왕실로 귀속되었다가 광업법 제정후인 1907년 평리원 재판장이었던 민병환의 풍고(豐串)회사(실제로는 메가다가 운영)에 의해 개발된다. 이어 정부 직영으로 전환되어 농상공부 대신 송병준이 총재를 겸임했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

개발 초기 생산량의 일부는 중국과 국내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일본 해군성 도쿠야마(徳山)연탄소에 공급했으나 평양무연탄이 해군함정의 연료로 최적임을 안 일본 해군성이 생산량 대부분을 수용하고자 하여 평양탄전은 일로 확장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당시 평양광업소의 총재는 송병준이었으나 경영 실권은 일본인(메가다 재정 고문 등)이 장악하고 있었다.

당시 신문에는 이러한 외세의 자원 약탈을 경계하는 독자의 투고가 실려있어 눈길을 끈다.

“석탄품질이 좋아 연기도 없고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지라, 만일 외국사람

〈평양광업소 개발〉

국내 최고의 탄광인 평양광업소는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1년간 투자비 30만圓(일본 화폐단위로 1953년 2월 화폐개혁 전까지 사용됨)을 투입, 연 6만 톤 생산을 목표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으며, 45만圓을 투자하여 총 7마일의 탄광철도(평양탄전에서 대동강 하구에 이르는 협궤철도)를 부설하여 원활한 수송을 기하였다. 또한 채탄 지역도 인근 고방산지대 등으로 확대되었다.

평양광업소 개광 초기 생산현황

연도	생산량(톤)	생산금액(圓)	직원(명)	광부(연인원)	임금(전/일)
1908	46,487	232,435	49	300(108천)	48
1909	53,493	267,465	43	500(180천)	50
1910	70,151	350,755	35	800(288천)	55

주)노동시간은 1일 11시간

에게 개발을 허락하면 선왕의 강토를 남에게 허급함이니 비단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대외에 큰 관계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원 수탈은 본격화되어 1922년 4월, 평양광업소의 생산권은 일본 해군성으로 이관되어 해군연료창 평양광업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925년부터는 생산탄에 대한 외국 반출이 금지되더니 1937년에 이르러

서는 생산량조차 일본 해군의 기밀로 분류되어 발표가 중단되기에 이른다. 평양탄광은 그만큼 중요한 자원의 보고였다.

평양탄광은 국내 석탄산업의 메카였다. 당시 국내 유수의 탄광개광에는 의례 평양광업소의 인력이 참여했고 광복 후에도 그 곳에서 근무하던 한인 기술자와 기능공이 대거 월남하여 남한지역의 탄광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다. 개광 초기의 석탄 이용

평양석탄의 존재는 일찍이 알려져 있었다. 1590년 평양관찰사 윤두수(尹斗壽)가 편찬한 「평양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평양성 동쪽 10리 지역 문수봉에 석탄소가 있다. 정동 10리 예미현 및 동북쪽 30리 고방산 등지에 모두 석탄이 난다. 불이 붙어도 연기가 나지 않으므로 무연탄이라 한다.”

또 1730년 윤유(尹游)는 「속평양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평양부 동쪽 30리쯤 미륵현에 흑토가 있다. 도관찰사 허관(許灌)이 말하기를 이 것이 이른바 석탄이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평양지방에서는 오래 전부터 무연탄을 사용하였으되, 산출지 부근의 일부 주민에 의해 취사용으로 소량 채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평양석탄의 사용이 본격화된 것은 열강 세력의 국내 유입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게 된 외국인들에 의해서였다. 1896년 11월 서울 정동에 위치한 고샬기(Gorshalki)상회에서는 독립신문에 “The best quality Pengyang and Japanese coal on hand for sale” (최고품질의 평양탄 및 일본탄 입하 판매중)이라는 내용의 영문광고를 게재하였다. 같은 시기 진고개(충무로)에 자리한 야마이치(山一)상회에서도 평양탄과 수입한 일본탄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미 서울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외국인들이 석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한국인에 의한 석탄 개발

초기의 탄광 개발은 주로 외국인에 의해 이뤄졌으나 한국인이 참여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1899년, 본격적인 석탄광 개발에 뛰어든 김우성, 김익승이 바로 그들이

다. 이 두 사람은 러시아인들이 함경도 탄광개발에 실패하자 경성(김우성), 종성(김익승: 김규식 박사의 삼촌)의 석탄광 개발 허가를 얻어 개발을 도모하였다. 1899년 9월 20일자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경성군 생기면 등지에서 석탄이 나는 고로 김우성 씨가 농상공부의 인허를 얻어 그 곳에다 개광한 지 여러 달이더니 이제는 윤선(증기선)을 고용하여 한·일·청 삼국으로 그 석탄을 수출하겠노라고 외무부에 허가장을 청원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만다. 함북탄은 갈탄으로 탄질이 좋지 않고 지형, 기후 등 생산 여건도 열악한데다 가격 면에서 불리하고 판로 확보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열강 각축의 와중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가 석탄개발에 나섰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2. 광업법 제정

가. 광업법

1906년 6월 29일 제정된 『광업법』은 국내 광업행정을 규정한 최초의 법률이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국가에서 금·은·철 등의 생산을 장려한 바 있으나, 광업에 대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1896년에 「사광개채조례(砂礦開採條例)」가 제정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광업 전반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광업법 제정과 함께 비로소 광업권 등록이 시작되었다. 종전 왕실에서 허가한 개발권은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등록되었다.

광업권의 허가는 농상공부 소관이었지만 왕실을 끼고 도는 궁내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중 삼중으로 채굴권이 허가되기도 하고 이미 내국인이 채굴하고 있는 광산을 다시 일본인에게 허가해 주는 경우도 허다하여 분쟁이 많았다.

이에 일진회의 송병준은 농상공부 대신으로 입각하자마자 제일 먼저 광업법 제정에 착수했고 모든 광업권 허가를 농상공부로 귀속시킴으로써 광업권을 남발하는 왕실을 견제하였다.

본문 29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된 최초의 광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조 : 광구는 직선으로 경계하는 다각형으로 하되 면적에 있어서는 석탄광구는 5만평, 기타 광구는 5천평 이상으로 하며 총면적은 각 100만평 이내로 한다. 광구도의 축척은 1/1200이다.

제 7조 :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 허가한다.

제12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1년 내에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은 때와 광세를 체납 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제15조: 광업권자가 광업상에 필요할 시 토지사용권을 가지되 매년 임차료를 선 급하여야 한다.

제16조: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했을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광산세는 1%로 하고 광구세는 연간 1천평당 50전으로 한다. 다만, 초년도는 반액으로 한다.

제22조: 밀채한 광석은 국가에 귀속되며 벌금은 50환(대한제국 화폐단위로 한일 합방 이전까지 사용) 이상 1000환 이하로 한다.

제25조: 궁내부 소속 광산은 칙령(왕의 명령)으로 고시한다.

제29조: 중요한 광업 처분은 일본국 통감의 동의를 요한다.

대한제국시대에 제정된 광업법은 왕실의 전유물인 광업권을 개방하여 자유경쟁에 의한 광물개발을 촉진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인에게 광업 독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한 것이기도 했다. 친일내각은 광업권의 허가를 일본인에게 편중시켜 급기야 국내 광업계를 일본인이 독점하기에 이른 것이다.

광업법이 시행된 이듬해 5월말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에게 허가된 것은 5 건에 불과하나 일본인이 취득한 허가권 수는 37건으로 7배에 이른다.

나. 조선광업령

한일합방후 일제는 1915년 12월 제령 제8호로 '조선광업령'을 제정하고 1916년 2월 「조선광업령시행규칙」과 「조선광업등록규칙」을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자원 수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다.

일제는 구한국 정부가 이미 허가했거나 구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광업권은 인정하되, 외국인의 새로운 광업권 취득을 금지함으로써 광업권 독점의 터전

을 마련하였다. 이후 일본인의 광업권 취득은 급증한다.

일제는 조선광업령을 통해 종래의 광업법에서 '광물'로서 규정한 광물 외에 추가로 텅스텐 등 22종을 법정광물로 채택했다. 또한 광업권 등록과 관련 '선원주의'를 고수하는 '분광업 제도'를 채택하여 광산개발을 촉진하였다.

'선원주의'는 조선 말기에도 실시되었지만 그 당시는 광업의 기반이 빈약하여 큰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 광업회사가 늘어나고 기계화가 진척되면서 일본인 개인이 광업계에 뛰어드는 일도 허다했다. 만약 개발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개인이 발견한 광맥이 장래성만 있다면 일본인 회사나 재력가에게 고가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광맥의 발견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제2의 원동력은 '덕대광업' 제도와 신맥 발견 규정에 있었다. 특히 신규 광산뿐 아니라 기존의 광산에서도 신맥 발견자 우대 제도'를 실시하자 신맥 발견이 성행하고 광업개발도 촉진되었다. 심지어 초부나 목동들까지 모두 새로운 광맥의 발견에 뛰어들어 신규 광구의 출원이 급증하게 되었다.

〈광업권 등록번호 제1호 운산금광〉

광업법 제정이후 제1호로 등록된 광구는 1885년 미국인에게 허가된 운산금광이다. 운산금광은 1915년 제정된 조선광업령에 의해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이 제한되는 등 모든 광업권을 일본이 독점하는 가운데도 1920년대까지 미국인에 의해 개발된 유일한 광산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이 평양탄광을 확보하는데 미국이 동조해준 사실과 1905년 7월에 체결된 태프트·가쓰라 밀약(미국이 필리핀에 우위를 선점하는 대신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선권을 기진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편 러시아인이 조선왕실로부터 최초의 채굴권을 취득했던 함경도 경성과 경원 탄광의 등록번호는, 1945년 간행된 광구일람표에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광업법 제정 당시 광업권 허가를 받고 1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었거나 후일 제3자에 의해 재등록됐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④ 조선광업령의 주요 내용

광종은 금, 은, 동, 연, 창연, 주석, 안티모니, 수은, 아연, 철, 유화철, 격로모철,

만암, 텅스텐, 수연, 비(砒), 니켈, 코발트, 인(燐), 흑연, 석탄, 석유, 토역청, 유황, 운모, 석모, 고령토, 납석(蠟石; 활석을 포함한다), 명반석, 중정석, 형석, 마그네사이트, 규사, 사금, 사석 및 사철을 칭한다.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면적은 석탄은 5만평 이상, 그외의 광물은 5천평 이상으로 하고 100만평 이상 초과를 금지한다.

선출원자에게 우선 허가한다.

허가를 얻은 다음 1년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3년이상 휴업할 때 또는 광세를 체납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조선광업령 선포이후 광업권 허가현황

연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전체	석탄	전체	석탄	전체	석탄	전체	석탄
1911	207	5	190	12	5		402	17
1913	135	6	207	24	10		352	30
1915	157	5	205	18	18		380	23
1917	461	1	763	13			1,224	14
1919	134	4	328	57			462	61
1921	60	5	356	237			416	242
1923	67	3	66	9			133	12
1924	114	6	85	22			199	28
1925	144	6	134	10			278	16

출원수수료는 100圓, 등록세는 200圓, 증감구료는 50圓으로 하며 광산세는 광물가격의 1/100, 광구세는 1년간 1000평에 60전으로 하고 초기 3년간은 반액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새로운 광업권 취득을 금한다.

3. 탄전조사

가. 최초의 지질조사

한반도에 대한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일찍이 미국인 지질학자 라파엘 펌펠리

(Raphael Pumpelly)가 1862년에서 1865년 사이에 극동지역 일대 즉 중국북부와 만주, 몽고 및 한국의 지질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 지질조사의 효시는 독일인 지질학자 칼 고트쉐(Carl. C. Gottsche)가 1886년에 발표한 「조선국 지질개요」를 꼽는다. 1883년 한·독 통상조약이 체결된 뒤인 1884년, 동경제대 지질학과 강사였던 그는 우리나라 전역을 11개월 동안 답사 하여 「조선반도지질답사기」를 작성하여 1886년 베를린 왕립대학 학술회보에 「조선국 지질개요」를 발표하였다.

1891년에는 영국인 홀랜드(T. H. Holland)에 의해 우리나라 암석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또 러시아의 지질학자 류벤트호프도 북한지역의 광물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지질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일본인에 의해서였다. 1900년에서 1902년까지 3년 동안 동경제대의 고토오(小藤) 박사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전역의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8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므로써 한국지질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에는 통감부에 한국광산조사대가 결성되었다. 이노우에(井上禱之助) 박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10명의 학자들은 1904년 12월부터 1906년까지 한반도의 광산을 조사하여 『한국광업조사보고』 전 6책(1906년 농상무성 간)과 조선지지도(40만분의 1 지도)를 간행하였다.

한편 통감부의 광산조사대와는 별도로 1905년 11월, 대한제국은 농상공부 산하에 광상조사기관을 설치하고 일본인 교지베(巨智部忠承) 박사와 다무라(田村英太郎)

선원주의(先願主義) : 먼저 출원한 자에게 광업권을 허가한다

분광업제도(分鑛業制度)

- 덕대광업제(德大鑛業制) : 타인의 광구에서 광맥의 일부에 대한 채탄 허기를 받아 일정한 분철(分鐵:광산세)을 납부하고 나머지 광산물을 취득하는 제도
- 신맥발견 보상제도(新脈發見 補償制度) : 기존의 광산에서도 새로운 탄맥을 발견한 자가 양쪽의 연장 각 150m씩의 구역을 6개월간 분철 없이 채굴할 수 있도록 하며, 발견자가 채굴 허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력 개발이 어려울 경우 그 3백m 구간을 쪼개어 분광덕 대들에게 나누어주어 그 분철수입으로 발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학사를 초빙하였다.

그들은 평양지역 무연탄광과 함경북도, 경상북도 신생대 제3기 탄전 등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지베는 1908년 지질학 잡지 제15권에 「평양 사근탄층 개설」을, 다무라는 1910년 농상공부 공무국에서 간행한 광상조사보고서 제1호에 「한국석탄 및 석문산지 일부분 조사보문」을 발표하였다.

나. 자원탈취를 위한 자원현황 실사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는 농상공부에 광무국을 설치하고 산하에 광산조사원을 두어, 1911년부터 1917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걸친 광상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수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대륙침략의 병참 기지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7년에 걸친 조사 결과 「조선향상조사요보」와 「조선향상조사보고」가 각각 출간(1917년)되었다.

광무국파는 별도로 총독부 식산국의 나카무라(中村新太郎)는 1914년 강원도 남부 산악지대의 지질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삼척, 영월, 정선, 강릉 등 4개 지역에 탄전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한편 합방 이듬해인 1911년, 이러한 일련의 광상조사와 지질조사에 앞서 총독부는 전국에 걸친 석탄 산출지를 파악 조사하여 조선의 석탄자원 개발에 기초를 삼고자 했다. 당시 조사 대상은 전국 11개도에 84개소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 3, 강원 3, 충남 2, 전남 1, 경북 10, 경남 3, 황해 5, 평남 24, 평북 6, 함남 7, 함북 20개소 등 절반 이상이 평남과 함북에 편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석탄 산출지는 대체로 과거 문헌이나 지방관의 보고, 소규모 영세탄광의 파악 등 가능한 정보를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일제가 실제로 탐사하여 파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한반도 전역에 석탄 산출지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후 실시된 탄전조사에 근거 내지 참고로 활용되었다.

다. 연료선광연구소 설치

총독부 광무국의 광산조사 활동이 끝나자 1918년 5월 일본은 한반도 광물자원의 체계적 수탈을 위해 광상조사를 제도화하였다. 먼저 「지질조사소」를 설치하고 5만

분의 1 지질도 작성을 시작하여 1938년까지 총 19집의 지질도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4년 뒤인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 식산국에 *연료선광연구소를 설치해 석탄탐사를 본격화했다.

연료선광연구소는 곧 3개의 전선(全鮮)탄전조사반을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다. 1923년 이시쿠라(石倉)와 다데이와(立岩) 등 2명의 기사와 여러 명의 기술원으로 구성된 제1반은 평안도 지방에 대한 조사부터 착수하였고, 제2반과 제3반도 각각 전국 탄전지대를 연차적으로 실사하였다.

한반도 석탄산출지(1911년 5월)

도	시,군	면(산, 포, 곶)	도	시,군	면(산, 포, 곶)
경기도	통진군	군내면, 월여곶, 고리곶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면, 잉차곶(苧次串), 동부면
강원도	통천군	영의면, 담전면		순천군	밀전면, 풍동면
	삼척군	*견박곡(지상리)		맹산군	광천면
충청남도	한산군	남상면, 남하면	평안북도	철산군	
전라남도	능주군	동면(구암리)		초신군	
경상북도	장기군	현내면, 현외면, 양남면, 북면		의주군	
	연일군	일월면, 동해면		용천군	백천포
	영해군	읍내면		과산군	동면
	선산군	해평면, 산양면, 몽대면		정주군	
경상남도	부산		합경남도	문천군	운림면
	진주			고원군	산곡면, 신산면
	울산군	하부면		영흥군	진평면
황해도	황주군	덕수면, 송림면		함흥군	서가평, 동원평
	봉산군	동선면		단천군	
	금천군	현내면, 호현면	합경북도	청진	
평안남도	평양	대동강(문수봉, 사동, 백양산, 묵현 등) 율리면, 추을미, 임원면(고방산), 청룡면, 남제산, 자족면		길주군	덕산면
	상원군			명천군	이간면, 봉태치
	강동군	고읍면, 만달면, 마단면, 영수면(단현리)		경성군	주을온면, 주남면, 주북면, 오촌면, 서면
	증산군	반암면, 성석면		경흥군	신면, 고면, 상면, 하면
	개천군	내동면, 외동면		경원군	고건원
	안주군	남송면, 서면,		온성군	주원면, 와동면
				회령군	봉의면, 운두면, 영효면

주)삼척군 견박곡(見朴谷)은 1914년 도상면, 도하면과 통합되어 북삼면이 된 후 북평읍으로 승격된다. 북평탄전으로 분류되며 토탄이 출토되었다.

조사방법도 한층 진보하여 종래의 지층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추, 갱도탐 탐하는 등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40년까지 모두 14권에 이르는 「조선탄 전보고」가 작성됐으며, 이는 광복 이후까지 한반도의 석탄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게 된다.

◎ 연료선광연구소의 「조선탄전보고」 전 14권

- 제1권 회령 유연탄전, 이찌무라(市村毅) 박사 1927
- 제2권 화순 무연탄전, 이찌무라(市村毅) 박사 1927
- 제3권 통천 유연탄전, 이찌무라(市村毅) 박사 1928
- 제4권 (1923~1924 시추작업 보고) 우찌다(内田鯤五郎)외 2인 1928
- 제5권 고원 무연탄전, 고히라(小平亮二) 기사 1930
- 제6권 경성 유연탄전, 시라키(素木卓二) 기사 1930
- 제7권 (1925~1926, 시추작업 보고) 우찌다(内田鯤五郎)외 1인 1930
- 제8권 문천 무연탄전, 고히라(小平亮二) 기사 1931
- 제9권 (1927~1928 시추작업 보고) 우찌다(内田鯤五郎)외 1인 1931
- 제10권 평남 북부 무연탄전, 시라키(素木卓二) 기사 1931
- 제11권 (1929 시추작업 결과보고), 기요야(魚谷信弘) 기수 1934
- 제12권 (1930~1932 시추작업 결과보고), 기요야(魚谷信弘) 기수
1937
- 제13권 평남 남부 무연탄전, 마쓰시다(松下進) 촉탁 1938
- 제14권 강원 삼척 무연탄전, 시라키(素木卓二) 기사 1940

14권의 보고서 중 시라키에 의해 작성된 제14권 「삼척무연탄전조사보고서」는, 조사 면적만도 1억 평 내외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탄층이 거의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 1957년 이후 민간자본에 의한 삼척탄전 개발시 기초 자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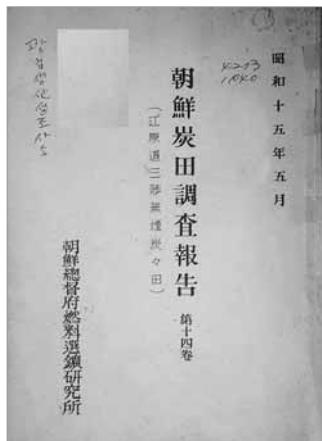
라. 삼척 무연탄전과 시라키 다쿠지

삼척탄전에 대한 조사는 연료선광연구소 이전에도 시행되었다. 1914년 삼척, 영월, 정선 및 강릉에 4개의 탄전이 존재한다는 나카무라(中村新太郎)의 보고가 있었고, 1926년 4월에는 평양해군광업소 지질기사 고쿠리(小栗)가 삼척탄광을 조사하였다.

주) 연료선광연구소는 탄전조사, 조선탄의 이용시험, 유용광물의 처리방법시험 등을 위해 설립됐다. 1917년 일본인 거상 에이키(鈴木)가 노량진에 세웠던 선광제련소가 제1차 세계대전 후 광산물 수요격감으로 가동을 중지하자 이를 조선총독부가 인수하여 연료선광 연구소로 명명했다.

다는 기록도 있다.

“ 무연탄이 있는 데는 강원도 소달면인 바, 지난 달 말에 평양 해군광업소의 고쿠리 기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께가 2척 내지 3척인 탄층 2매가 노출하고 함탄층은 그 길이가 수리(里)에 궁하여 무연괴탄이라. 매장량은 1억 톤에 달한다 함으로



▲ 제14권『삼척탄전조사보고서』

그러나 삼척탄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개발은 연료선광연구소의 시라키 다쿠지에 의해서였다. 1891년생으로 1922년 동경대학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1924년부터 광복때까지 연료선광연구소 탄전지질조사 반장으로 근무한 그는, 특히 삼척탄전과 인연이 깊다. 자신의 대학 졸업논문인 「한국삼척지역의 지질」을 보완하여 1930년 「삼척무연탄전 지지도」를 발표한 바 있으며, 삼척개발주식회사의 취지역으로 삼척탄광 개발에 직접 관여하였다.

그는 1930년 함북경성 유연탄전, 1931년 평남북부 무연탄전 덕천구역을 조사 보고하고, 1935년에는 남한 최초의 개광탄전인 문경탄전을 고바다케(小晶信夫)와 함께 조사하여 「문경무연탄전지지도」(조선지질조사소 간)를 펴내기도 했다.

함태탄광 지역을 오픈하여 보류광구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으나 함북경성, 평남덕천, 경북문경, 강원삼척 등 우리나라 주요 탄전지대를 두루 섭렵하고 「탄전지지도」를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석탄산업의 기초를 제공했다.

4. 개광 초기의 석탄산업

가. 제1차 세계대전과 석탄산업

한일합방 이후 1915년까지 고속으로 성장하던 국내 석탄산업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고비를 맞는다.

일본은 군수산업의 발달로 석탄산업도 덩달아 호황을 맞지만 한반도의 사정은 좀 달랐다. 석탄증산이 둔화되는 역현상을 보인 것이다. 1915년 23만 톤으로까지 증가했던 생산량이 급속히 하락하여 1916년에는 19만 톤을 기록했다. 그 뒤 줄곧 그 수준에서 머물다가 종전 이듬해에는 22만 톤으로 회복되었으나 1915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전쟁 중 일본의 군수경기 호황으로 한반도 내의 생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노동력이 일본의 큐슈우탄광 등으로 유출된 데다 공업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 탄광의 채산성이 낮아지게 되자 결국 많은 탄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나. 1920년대의 석탄산업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1914~1918) 부진하던 국내 석탄산업은 1919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20년 이후 급신장세로 돌아선다.

1920년 석탄 생산량은 26만여 톤으로 40% 증가하더니 일본 해군성으로 평양광업소가 이관된 1922년에는 31만 7천 톤, 1924년에는 39만 9천 톤, 남한 최초로 문경광업소가 개광된 1926년에는 68만 3천 톤에 달하는 등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1929년에는 93만 8천 톤에 육박하여, 1919년에 대비해 볼 때 불과 10년만에 4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우리의 석탄산업은 이 때에 이르러 그 여명기를 벗어나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1920년대 국내 석탄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종전 직후 일본 국내경제 상황의 변화다. 일본의 석탄산업은 전시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으나 종전과 함께 공급과잉으로 인해 도산하는 탄광이 속출했다. 일본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중국, 시베리아 등 국외 석탄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탄의 증산도 서두르게 되었다.

그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함경북도에서도 아오지탄광을 비롯하여 경원, 경성, 회령, 생기령, 봉의 지역의 탄광들이 속속 개발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였다.

두 번째 요인은 1차대전 당시 일본에 진출했던 한국의 노동자들이 종전과 함께 다시 귀국해 온 결과였다. 그들의 풍부한 노동력과 향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탄광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채탄방법의 발전이다. 종전의 노두채탄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채탄방법을 채택하므로써 고속 증산이 가능해졌다. 또한 간도탐탄과 시추 등으로 심부의 탄층 판단이 가능해져 채굴 범위가 확대된 것도 증산의 원인이 되었다.

다. 아오지탄광 개광

연도	생산량			수입	공급계	수출	국내소비
	무연탄	유연탄	계				
1907	2		2		2		
1908	46		46		46	40	
1909	60		60		60		
1910	75	3	78	130	208	73	
1911	104	17	121	235	356	87	
1912	106	22	128	306	434	88	
1913	105	23	128	373	501	91	
1914	154	30	183	356	539	120	500
1915	183	46	229	383	612	164	520
1916	145	45	191	402	593	123	590
1917	150	45	195	618	813	123	650
1918	148	40	188	751	939	120	720
1919	176	43	220	886	1,106	92	703
1920	205	56	261	823	1,084	118	984

〈일본 탄광 취업과 백탄가〉

1910년대 국내 탄광 근로자의 일본 탄광 취업이 본격화되며 남편을 일본 탄광으로 떠나 보낸 아내들 사이에서는 '백탄가'라는 민요가 불리워지고 있었다.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던 여인네들은 저자거리 선술집까지 흘러나와 속타는 기슴을 젓기락 장단에 실어 보내곤 했다.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는 풍풍 나고요
이 내 가슴 타는데는
연기도 풍풍 안난다

1910년대까지 평양광업소가 국내 석탄산업을 주도했다면, 1920년대부터는 국내 최대의 탄광인 아오지탄광이 개광되어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 아오지탄광의 매장량은 150억 톤으로 6억 5천만 톤의 매장량을 보인 평양 사동탄광이나 2억 톤으로 추정된 삼척탄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1945년 발표자료 기준)

아오지탄은 갈탄인 유연탄으로 함경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른 갈탄과는 달리 탄질이 좋아서 호평을 받았다. 검은 연기가 나지 않고 불꽃이 길며 화력이 세어 공장 보일러용 연료로 적합했고, 유황 함유량이 적어 냄새가 없으므로 난로 연료로도 적합했다. 독한 가스가 나오지 않으므로 도시의 가로수들을 고사시킬 염려가 없고, 매연이 심하지 않아 철도 기관차용으로 사용해도 터널을 지날 때 승객이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1920년대 말부터 개발에 착수됐던 아오지탄광은 1935년 웅기항이 건설되고 그해 11월 '강안(江岸)철도' 즉 두만강 탄광철도가 개통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강안철도는 회령~웅기간 두만강 하류 국경지대를 잇는 철도로, 아오지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이 이 철도를 통해 전국에 공급되면서 아오지탄광은 우리나라 최대의 석탄산지임을 과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함북 국경지대에는 종성, 온성, 경원, 경흥 등 탄광도시들이 잇따라 생겨 났다.

아오지탄은 탄질이 좋아 상당량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일본은 또한 두만강 유

국내 석탄수급 현황(1921~1930) (단위: 천톤)

연도	생산량			수입	공급계	수출	국내소비
	무연탄	유연탄	계				
1921	190	121	311	665	976	131	900
1922	180	140	317	659	976	113	863
1923	200	180	380	812	1,192	115	1,078
1924	210	189	399	690	1,089	147	943
1925	359	263	622	673	1,295	213	1,082
1926	352	331	683	742	1,425	224	1,202
1927	392	317	709	933	1,642	238	1,405
1928	465	351	816	882	1,698	274	1,424
1929	538	400	938	894	1,832	286	1,546
1930	478	406	884	936	1,820	240	1,580

역의 여러 탄광에서 생산된 갈탄을 사들여 연료용으로뿐만 아니라 인조석유 제조와 화학공업 제품의 원료로도 사용했다.

1937년 3월 조선석탄공업(주)은 함북 경원군에 아오지탄을 원료로 하는 액화공장을 준공하였다. 또 1939년 11월에는 함북지역의 동양척식회사 계열 탄광 여러 개를 합병한 조선유연탄(주)가 설립되어 생산의 효율을 도모했다. 그 결과 이 지역 갈탄의 생산은 날로 가속화되었다.

1920년대 석탄광구 등록상황
(단위: 천평)

연도	합 계	가 행	휴 업	광구당 평균면적
1920	338	24	314	692.2
1921	513	25	488	504.4
1922	523	32	491	1,705.4
1923	500	37	463	1,733.4
1924	484	37	447	1,761.6
1925	442	39	403	1,871.2
1926	426	49	377	1,904.6
1927	471	57	414	1,768.0
1928	465	59	406	1,784.8
1929	449	67	382	1,826.9

제2절 일제의 자원수탈 (1930~1945)

1. 자원수탈

가. 대륙침략 병참기지

1929년에 발생한 세계대공황은 아시아와 일본경제에도 예외 없는 대격변을 몰고

주요탄광 개발현황(1925년)

탄광명	소재지	생산량(톤)	가액(圓)	종업원수
봉 산	황해 봉산군	57,547	363,591	856
강 동	평남 강동군	47,641	285,750	335
대 성	"	18,263	133,727	214
안 주	평남 안주군	51,950	373,210	577
평양광업부	평남 대동군	140,648	1,227,885	1,752
대 보	"	44,207	330,265	179
정 백	"	24,892	210,476	250
강 서	평남 강서군	85,311	611,701	379
통 천	강원 통천군	7,747	46,608	70
함 흥	함남 신흥군	52,981	338,981	284
길 주	합북 길주군	3,496	22,065	56
죽 포	합북 회령군	2,426	12,130	20
회령	"	18,644	128,858	330
계 림	"	17,512	121,640	300
봉 의	"	3,468	20,114	28
포 십	합북 종성군	2,929	23,434	20
나 남	"	2,358	16,506	25
생기령	"	38,235	265,625	376

주)생산가액 1만圓 이상 탄광

왔다. 불황에 허덕이고 있던 일본은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아시아대륙 침략을 획책했다. 1931년 9월 일제는 일본군과 중국군의 사소한 충돌을 빌미로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만주의 길목에 위치한 한반도는 일제의 아시아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락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석탄의 수요는 날로 증대되어 갔다. 만주탄이나 일본탄은 산지에서의 소비 급증으로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일제는 국내 최대 유연탄광인 아오지탄광에 대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남한지역의 탄광개발에 착수하였다. 영월탄광, 화순탄광 그리고 광구등록 자체를 보류해 두었던 삼척탄광까지 포함하여, 남한지역의 거의 모든 탄광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석탄증산과 수탈

(1) 탄광개발 확산

1930년대까지 일반 가정의 주 연료는 신탄(薪炭: 장작과 숯)이었으며, 철도용,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석탄은 만주의 푸순탄과 일본의 큐슈탄이 무제한 수입되고 있었다.

국산탄은 철도 수송이 가능한 함경도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던 갈탄과 평양의 해군연료창에서 주로 군함용으로 사용한 무연탄 정도로, 생산량은 유연탄을 포함하여 100만 톤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 석탄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자 이에 부응하여 함경북도 두만강 하류의 아오지탄광이 국내 최대의 유연탄광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남한 최대의 무연탄광인 삼척탄광의 개발이 시작되는 등 남한 지역의 탄광들도 속속 개발됨에 따라 1935년 석탄 생산량은 마침내 200만 톤을 넘어서고 이후 국내 석탄산업은 고속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2) 증산정책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로 국내에서는 군수공업이 급격히 활성화되었고 석탄 수요도 급증했다. 석탄수송 선박이 전쟁 수행을 위해 징발되면서 일본탄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지자 일제는 탄광개발 및 석탄 증산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 전시체제를 표명하여 「배급통제규칙」을 공포하고 국내 석탄수급을 통제하였으며, 이어 1938년 5월에는 「조선중요광산물증산령」을 공포 시행하여 제도적으로 석탄 증산을 획책하였다.

「조선중요광산물증산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광물에 대하여 강제 개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국가가 지정하는 자에게 광업권을 양도할 것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광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본이 없어 개발을 하지 못하는 조선인의 광업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구실이 되었다.

1940년 8월 총독부는 '조선광업진흥회사(주)'를 설립하고 광물 증산에 대한 각종 국가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1942년 이후부터 「석탄증산시설장려금」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1941년 7월에는 「조선광업령」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지정광구제를 채택하는 등 석탄증산의 제도적 기틀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던 중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전시 체제를 강화하면서 자원 수탈에 더욱 골몰하게 된다. 1941년 7월 23일에는 「조선광업령」을 개정하여 종래의 선원주의를 폐기하고 개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우선 개발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실상 국내의 탄광개발은 일본인에 의한 개발만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1943년 6월 「중요광물증산령」을 개정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사용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당시 광업령에 명시된 "광업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 양도, 저당,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의 목적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17조 제2항)"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광업권에 대해서는 덕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중요광물증산령을 개정하여 이러한 임대차 형식의 사용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법을 고쳐서라도 침략전쟁을 위해 석탄증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3) 노동력 착취

탄광 개발이 본격화되고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일제는 1938년 광산보안법의 기원인 *「조선광업경찰규칙」과 재해보상규정의 기원인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을 제정했다. 명분상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듯하나 사실상 일본 탄광 재벌의 노동력 착취를 위한 빌미

를 제공하였다.

태평양전쟁까지 빌빌하자 전시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석탄증산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졌다. 노동력 확보도 시급해지자 총독부가 직접 나섰다. 「총업원 이동방지령」, 「임금 임시조치령」, 「노무조정령」, 「조선직업소개소령」이 공포되고, 생산책임제가 시행되더니 결국 징용제까지 실시되었다.

징용은 1939년 7월 8일 『총동원법』 4조에 근거하여 「국민징용령」이 공포됨으로써 가시화되었고, 1941년부터 시행되었다. 1941년 4월 18일 일제는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을 개정하여 부녀자까지도 간내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인력 동원에 혈안이 되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4년 2월 8일, 일제는 총동원법에 의한 전면징용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탄광에 필요한 인력은 '모집'에서 '현지징용'으로만 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조선인의 거주 이전이 제한되었다.

당시 남한 최대 탄광이었던 삼척탄광도 예외는 아니어서, 1944년 2월 현재 재적자 전원이 현지징용 되었다. 당시 탄광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외지징용을 면하기 위해 그나마 현지의 탄광에 징용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함경도 지방이나 일본으로 징용되어 가느니 삼척탄광으로 징용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2. 남한지역 개광

가. 최초 개광 문경탄광

남한지역의 탄광은 탄층의 변화가 심하고 채탄 조건도 열악했다. 이러한 경영상의 불리한 점 때문에 개발이 늦었다. 1930년대 이전에도 남한지역에서 소규모로 탄광이 개발되고는 있었으나 그 생산량은 미미하였다.

남한지역에서 가장 먼저 개광된 탄광은 경북 문경에 위치한 문경탄광이다. 총독부가 1926년 철도용 탄의 국내탄 사용을 지시하며 개광된 문경탄광은 이듬해인 1927년부터 본격적인 채탄에 들어갔다. 문경탄광이 가장 먼저 개광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였기 때문이다.

문경을 시작으로 1931년 전남 화순의 구암탄광이 개광되었고, 1935년에는 영월탄

광, 1936년에는 남한 최대의 탄광인 삼척탄광, 1938년에는 문경탄전의 일부인 은성탄광 등 남한지역의 탄광이 차례로 개광되었다.

이 중 영월탄은 조선전력회사 영월발전소의 발전용 탄으로 공급되었는데, 탄광에서 발전소까지 12km 구간에 공중 삭도를 건설하여 석탄을 발전소로 수송하였다. 화순탄은 주로 방직회사인 종연방직 광주공장의 보일러 연료로 공급되었다. 탄질이 좋고 생산량도 가장 많았던 삼척탄은 절반 이상이 목호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어 발전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북삼화학공장 등의 공업원료 탄으로 사용되었다.

1940년대 들어서는 각 지방에서 규모는 작지만 광범위하게 탄광 개발이 이루어졌다. 경기의 서선탄광, 충북의 상원 보은 및 단양탄광, 충남의 예산탄광, 전남의 세창, 보국, 전남, 능주탄광, 길원영일 탄광, 강원도의 옥계와 강릉탄광 등이 가행되었

〈조선광업진흥회사(주)〉

1940년 6월 22일 제령 제33호로 공포된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업국책회사로 총독부의 광업에 대한 투자와 업무를 대행하여 집행하였다. 조선총독이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고 식산국에서 감리관을 파견하여 직접 감독했다.

주요 업무는

중요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또는 제련업의 직영

중요광물에 관한 광상의 조사

중요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또는 제련업에 대한 기술적 지도

중요광물의 매매 또는 알선

중요광물을 목적으로 한 광업 또는 제련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또는 설비의 매매

중요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또는 제련업 및 이와 관련된 제조업에 대한

자금의 융통 또는 투자 등으로 현재의 광업진흥공사의 기능과 유사하다.

조선광업진흥회사는 광복후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귀속사업체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국영기업불하 정책에 따라 1957년 해산됐다.

다.

이들 탄광이 소규모임에도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탄광 인근에 소비처인 소규모 공장들과 연탄공장이 있어 수송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규모 탄광들의 가세로 1941년 국내 석탄 총 생산량은 7백만 톤을 넘어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

주)「조선판업경찰규칙」은 광업권자, 기술관리자의 자격, 시설설치 및 성능검사, 재해보고 등 광산보안에 관하여 규정하므로써 재해 방지에 주력한 듯하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해당 기준을 준수했을 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광업권자가 면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음으로써 도리어 일본재벌의 최대이윤을 보장하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탄압 도구로 이용되었다.

다.

나. 삼척탄광 개광

남한 지역의 최대 탄광인 삼척탄광은 19세기 말 구한국에서도 중요한 석탄광으로 분류됐을 정도로 그 존재가 일찍부터 알려졌으나, 총독부가 「보류탄전」으로 지정하여 민간의 광업권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개발이 늦어졌다. 산간오지인데다가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주변에 석탄 소비 시설이 없는 점도 개발 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삼척탄전을 차지하려는 시도는 본격적인 탄전조사가 시행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평양상공회의소 부회장이던 히라이는 삼척탄광을 선점하기 위해 보류광구 지정에서 제외된 금천리 일대의 광구를 찾아내어 미리 *등록해 두었으며, 1932년에는 미쓰이광업과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철도 부설에 착수하였다.

한편 1932년과 1933년 계속된 가뭄과 쌀 공출에 따라 낙동강 유역의 기근이 심각해지고 민심이 악화되자, 총독부는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1933년 삼척광구에 대한 보류 지정을 해제하기에 이른다. 기근에 시달리는 경상도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다.

1935년 미쓰비시 계열 자본으로 설립된 조선무연탄주식회사는 삼척 도계 지역 16개 광구를 등록했다. 16개 광구는 그해 12월 조선전력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가 1936년 삼척개발주식회사 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미쓰비시, 미쓰이, 조선전력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삼척개발주식회사의 초대사장은 나이토 당코조(内藤熊喜: 전 영월탄광 사장), 도계 탄광구 책임자는 이노바 도시로(井陽場海郎), 삼척탄전 조사에 참여했던 시라키는 취체역을 맡았다.

삼척개발주식회사는 사실상 총독부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설립된 회사였다. 삼척탄광을 차지하려는 미쓰이, 미쓰비시 등 일본 재벌간의 경쟁이 심화되자 총독부가 개입, 일종의 콘소시움 형태로 설립을 허가하였다. 삼척·북평 지대에 대단위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던 총독부로서도 이곳 북삼중화학공업단지의 연료 공급창 역할을 해줄 삼척탄광의 개발이 시급했다.

삼척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으로 화력발전(삼척화력발전소, 광복 후 건립)을 일으키고, 그 전기로 석회질소 북삼화학(비료공장)과 북평제철소(양양철광에서 생산된 철광석으로 철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광복 후 양양에 제철소가 세워진다), 오노다

시멘트공장을 가동하겠다는 것이 당시 총독부의 청사진이었다.

3. 석탄수급

가. 철도용탄은 푸순탄을 사용

1920년대 후반에 들어 국내 생산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은 해마다 90만 톤씩 수입되고 있었다. 공업용 탄의 경우 열량이 높고 불꽃이 길어야 하나 국내산 갈탄의 탄질이 그에 미치지 못해 일부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철도용 탄의 경우는 당시 경부, 경의, 호남, 경원선 등 우리나라 국철을 위탁 경영하고 있던 '남만주철도회사'가 만주의 푸순탄을 수입해 사용했다. 푸순탄의 가격이 저렴한 데다 '남만주철도회사'가 푸순탄광의 운영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함북의 갈탄은 미분탄이어서 철도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씨가 날려 철도 주변에 화재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탄을 철도용 탄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26년 총독부는 국내탄을 철도용으로 사용하려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철도국은 평북 안주탄(연간 유연탄 5만 톤 정도 생산)을 전량 납품 받고 평양탄전의 마세크연탄 1만 톤을 구입하는 등 국내탄 사용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러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쓰이, 미쓰비시 등 재벌급 탄광업자들이 생산하는 일본의 큐슈탄이나 만주의 푸순탄이 수입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

나. 배급 통제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은 『중요산업통제법』을 공포했다. 일본 경제는 자유경제체제에서 통제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일본은 한반도를 중공업기지화할 것을 계획하고 총독부 주도로 발전, 방직·화학공업 등 각종 군수산업을 한반도에 유

주)광구번호 6109로 장성 도계의 광구가 대부분 1935년에 처음으로 등록된 것에 반해 이는 그보다 앞선 1921년에 등록되었다.

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료, 원료 확보를 위해 탄광개발과 증산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중일전쟁의 발발로 만주 푸순탄의 수입이 격감하자 국내탄 생산 의존도는 높아지고 석탄의 사용 통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1937년 일제는 배급통제규칙을 제정하고, 그 해 결성된 석탄조합연합회에 석탄배급에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여 석탄 수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이어 1940년에는 석탄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석탄 조합연합회를 통해 전표배급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석탄조합연합회는 1940년 석탄동업조합연합회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42년 석탄배급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석탄의 공급 통제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생산과 공급의 이원체제는 광복 후 대한석탄공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석탄배급회사로 그대로 이어졌다.

다. 수급량의 기록적 증가

중일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석탄의 사용 용도는 철도기관차와 해군군함 연료가 주였고 산업용 수요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중일전쟁 후 석탄완전연소법에 대한 연구에 성공하며 발전 및 공업연료로 사용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삼척탄광 등지의 괴탄은 석회질소와 카바이트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등 석탄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쟁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박차를 가했던 탄광 개발과 폭력적 조치를 불사하며 시행한 각종 증산정책에 힘입어 국내 석탄은 기록적 증산을 이루해 나갔다. 1930년 생산량 88만4천 톤, 국내 소비량 158만 톤에 불과하던 것이 1935년에는 생산량 208만 7천 톤, 소비량 270만6천 톤으로 증가했고, 이어 1938년에는 생산량 390만4천 톤, 소비량 434만 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에는 생산량 712만4천 톤, 소비량 717만5천 톤 등으로 격증되어 갔다.

1944년에는 사상 최대의 생산량인 744만9천 톤, 국내소비량 925만 8천 톤을 기록하여, 1930년 대비 생산량은 8.4배, 소비량은 5.9배의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 1944년도 석탄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교통운수 부문으로 약 3백만 톤을 주로 철도 기관차 연료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제철제강 부문이 178만 톤을 기록했는데 주로 푸순탄, 홍게이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이었다. 연탄 제조용으로는 71만 톤이 쓰였는데 대개 무연탄이 사용되

었으나 일부 유연탄도 사용되었다. 또 두만강 연안 공장들이 함북 아오지탄광에서 생산한 갈탄 63만4천 톤을 석탄액화공업용으로 사용하였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막 바지에 이른 1944년,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서 석탄산업은 사상 최대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4. 석탄개발 방식

가. 광산 인력

개광 초기의 석탄 생산은 주로 인력에 의존했다. 석탄 광부는 당시에도 대표적인 3D업종이어서 탄광 노동력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인근의 주민들도 농번기에는 탄광노동을 기피하였고 다른 금속, 비금속 광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어야 했다.

기술자는 거의가 일본인이고 노무자는 대부분 한국인이었는데, 일부 중국인과 극히 소수의 일본인들도 있었다. 중국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동성 출신이 많았으며 합숙소 생활을 했다.

1920년대 탄광에 종사한 광부의 출신국별 분포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의 비율이 90%, 9%, 1% 수준이었다. 중국인 광부는 대체로 쟁외의 운반부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인 광부는 큐슈지방 탄광에서 종사하던 숙련부들이 많았다. 일본인 광부들은 채탄막장에서 채탄작업을 지도하거나 감독의 조수 노릇을 하며 한국인 광부들을 혹사시키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한국인 중 일부가 일본 큐슈탄광 등에 자발적으로 취업해 가기도 하였으나, 종전 후 일본내의 석탄 경기가 퇴조하여 다시 귀국하여 국내 광산에 취업하는 예가 많았다. 그들은 숙련된 노무자로서 1920년대 국내의 광산 기술력 향상에 밑거름이 되었다.

1930년대 초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한반도 남부지역의 계속된 흉년과 과다한 쌀 공출로 인해 기아문제가 발생하자, 총독부는 탄광이주정책을 시행했다. 광활한 만주의 미개간 지역으로 조선인을 이주시키고 만주보다 안정된 한반도에는 일본 농민을 이주시켜 자리잡게 하려는 것이 일제의 속셈이었다.

이러한 이주 정책에 따라 총독부는 당시 혹독한 짚주림에 시달리고 있던 경상도 지역의 주민을 만주와 중국 서북지방으로 집단 이주시켜 농사에 종사하게 하는 한 편, 경상·전라·충청 지역의 이재민 다수를 함북 회령의 유선탄광, 평남 대동군의 삼신탄광, 당시 개발 중이던 강원도 삼척탄광 등 탄광지역으로 이주시켜 부족한 탄광노무자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탄광이민정책은 형식상 모집이라는 형태를 취했으나, 이주민의 입장에서 는 짚주림을 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때 생겨난 「막장인생」이라는 말이 당시 이주민들의 울분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으로 통제경제체제가 전시체제로 바뀌자 소위 징용시대가 도래했다.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석탄을 더 많이 캐내기 위해 강제 징용에 의한 남획을 강행했다.

일제의 수탈정책에 의해 급조된 탄광촌은 단기간에 확대되었다. 전기가 들어오고 대규모 사택단지가 형성되고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유통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인 광부들은 전시체제 하에서 거주이전이 제한된 채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 집단 강제 노동수용소나 다름없는 탄광촌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인생 생지옥”이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1940년대 7백만 톤을 전후한 생산량의 기록적 증가는 이러한 한국 노동자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 이었다.

나. 개발 방식

1920년 이전까지는 노천굴이 대부분이었고 노두를 따라 채탄하는 정도가 고작이 었다. 지표에서 탄층을 따라 파고 들어가는 소위 압굴식이어서 아무런 기계나 장비 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20년대 중반 이후 민영탄광의 개방으로 일본자본이 유입되면서부터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탄층에 따라 사개를 개착함으로써 채탄방법이 점차 개선되었다. 비록 권양기조차 없는 초보적 상태였지만 착암기나 모터 등 소규모 기계력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채탄방법도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잔주식(殘柱式)을 채 용하고 운반, 배수에 중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과거 인력에만 의존하던 간내석탄 반 출 또는 간내수 배출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전 같으면 휴광할 탄광도 계속 채굴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탄맥 탐사, 탐광에 있어서도 지층조사 수준에서 진일보하여 금

강석 시추 등으로 심부의 탄층 판단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일제는 많은 자본이 투자되는 기계화에 힘쓰기보다는 인력 동원에 의한 채굴 확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30년대 모집에 의한 탄광이주책을 펴던 총독부는 1940년대에 이르러 강제징용을 실시, 값싼 한국인 인력을 이용한 석탄자원

자원수탈기의 석탄수급 현황(1931~1945) (단위: 천톤)

연도	생산량			수입	공급계	수출	국내소비
	무연탄	유연탄	계				
1931	519	418	937	830	1,767	316	1,451
1932	652	452	1,104	846	1,950	398	1,553
1933	741	566	1,307	1,061	2,368	469	1,898
1934	991	706	1,697	1,209	2,906	591	2,307
1935	1,167	920	2,087	1,359	3,446	649	2,706
1936	1,334	1,230	2,564	1,544	4,108	672	3,222
1937	1,476	1,410	2,886	1,649	4,535	445	3,463
1938	1,931	1,973	3,904	1,892	5,796	982	4,340
1939	3,209	2,262	5,471	1,993	7,464	1,040	5,260
1940	3,799	2,639	6,438	2,217	8,655	1,611	6,514
1941	4,270	2,854	7,124	2,514	9,638	1,376	7,175
1942	4,225	2,740	6,965	2,947	9,912	1,213	8,393
1943	4,497	2,427	6,924	2,910	9,834	782	9,054
1944	4,930	2,519	7,449	785	8,234	383	9,258

수탈을 강행하였다.

다. 덕대 개발

덕대는 광업주와 계약을 맺고 광구의 일부를 맡아 채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초창기 탄광 운영방식은 철저한 덕대제도로 이루어졌다. 광부를 거느리고 있는 덕대가 일을 청부로 계약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작업을 하였다. 석탄광산회사는 광부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덕대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것을 덕대가 광부에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다.

덕대는 분광덕대, 품위덕대, 수굴덕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또 모작패(광부 몇 명이 조합을 결성하여 덕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작업을 한 후, 탄광주에게

지불할 돈을 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덕대와 광부가 평등하게 분배하는 광부조합의 자영 형태)와, 무회계(덕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작업을 진행하여 탄광주에게 지불할 돈을 제한 뒤 덕대 4, 광부 1로 분배하는 덕대 위주의 운영방식), 대거리(무회계의 일종으로 15일간 작업에 덕대 14, 광부 1로 분배하는 방식), 도급(분배법을 나름대로 계약하여 진행하는 방식), 도가니(덕대 없이 광부들로만 하나의 단체를 형성해 채굴하는 방식), 결항(폐광된 탄광에서 선탄을 행함으로서 분철을 거두는 것)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당시 국내 석탄증산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덕대의 개념은 구한말 왕실이 직영하던 탄광에서 국가가 채탄 및 선탄, 수송 등 일체의 경영을 덕대에게 일임하고 징세에만 치중할 때에 형성되어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다. 그러나 『광업법』에는 덕대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광업권은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음)있었고, 단지 민사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일제는 석탄자원 수탈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법령에도 없는 덕대제를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이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제3절 광복과 국영개발(1945~1956)

1. 종업원 자치

가. 광복과 종업원 자치

8.15 광복과 함께 국내 석탄산업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탄광 운영의 핵심이던 일본인이 철수하고 강제징용 되었던 근로자들도 대다수 고향으로 돌아가자 탄광은 공동화 현상을 맞았다.

일시적으로 치안 부재가 지속되고 식량 등 생활물자 공급이 중단되어 탄광촌 잔류 주민들의 생활은 기아상태에 빠졌다. 생산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무엇보다 종업원들의 귀향 대책과 식량확보 대책의 수립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행정 부재상태가 지속되어 각 광업소 단위로 종업원들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탄광을 해산시키고 탄광시설을 확보하는 등 보광(保礦)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좌익과 우익의 치열한 대립 양상은 탄광지역에도 나타나 광산자치위와 이에 관련된 세력의 주도권 다툼이 극심했다.

주요 탄광의 자치위원장으로는 삼척탄광의 이종만(삼척개발주식회사 사장), 화순탄광의 강대호(건준화순탄광지역 자치위원장), 은성탄광의 김성휘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광복 당시 각 탄광은 일제 말기 일본인들의 약탈적인 남획으로 갱 내외 제반 시설은 이미 황폐화되어 있었다. 중산 위주의 무리한 가동과 난굴(亂屈)의 당연한 결과였다. 여기에 광복 직후 잔류 주민들에 의한 훼손이 가해지고, 탄광관리 부재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갱도의 자연적 붕락, 침수, 기타 시설의 마모, 파괴 등으로 정상복구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근로자도 대부분 떠나갔고 광산시설도 가동불능 상태에 처한 데다 더욱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필품 보급이 끊긴 상태에서, 광산을 지키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광복 직후 삼척탄광의 사정은 1946년 황충운(도계 제2대 소장 역임)씨가 남긴 「삼척탄광 현지보고」에 잘 나타나 있다.

◎ 삼척탄광 현지보고

삼천리 강산에 해방의 종소리가 들려오자 태백산 허리에 묻혀있는 우리 삼척탄광 종업원과 그의 가족 3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8월 17일 정오를 기하여 홍분과 감격에 넘치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었다.

왜적을 일시에 추방하고 우리는 새 출발을 서약하였다. 조직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시 극히 위급하였던 치안을 유지하고 사업계획과 시설보수에 전력을 기울였다.

해방의 감격과 새 출발의 홍분 가운데 우리는 가장 큰 몇가지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는 식량문제와 자금문제였다. 당시 종업원과 그 위 가족들은 3만이 넘었으나 식량의 재고는 한달여분에 불과했다. 앞으로의 대책은 물론,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음은 물론이었다.

근근히 일본인 사장을 쥐어짜서 귀향 여비도 못될 정도로 1차 해고 정산을 하게 되니 수많은 종업원은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르고 방황했다. 산간벽지로 교통은 불편하고 철도가 다니는 영주역까지는 2백리나 되는데 당시 보유하고 있던 30여대의 화물자동차 중 움직일 수 있는 것은 7~8대에 불과하니 도저히 해산방침조차 서지 못했다.

그러나 전원이 그대로 산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 전력을 경주하여 인구소개를 강력 시행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혼란한 가운데서도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비참하고 눈물겹게 산간 백여리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사수하며 우리의 자율정부가 수립되어 그의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배수의 진을 각오하였다.

당시 우리 종업원의 표어는 누구를 막론하고 초근목피(草根木皮)를 갈아 먹고라도 우리의 국보(國寶)인 삼척탄광 시설만은 절대 사수하자”는 것이었다. 우리의 지성이 감천하였는지 인구는 반수 이상이 귀향하고 내부의 질서도 비교적 정연하고 시설의 파괴도 없는 채로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9월 27일 드디어 미군이 삼척에 진주하고 다음날 탄광에까지 도착하였다. 일반인

들은 이에 용기를 얻어 성의껏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몇일 후 일본인 사원들은 한 사람의 희생자도 내지않고 돌려 보냈다.

미군이 진주한 이후에도 모든 치안과 작업은 우리의 자리만으로 하고 미군에 의존한 일은 없었다. 이에 미군은 장기간 탄광에 상주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고 불과 10여일 후에는 일체를 우리에게 맡기고 철수하였다.

얼마 후 미군정 관리관이 취임하자 서광이 멀지 않았음을 믿고 더 한층 분발하여 차차 작업준비를 시작하여 9월 중순에 발생한 대수해의 복구공사에 전력을 기울렸다.

연합군의 영웅적 전투에 의하여 조선은 일제 압정에서 해방되고 우리 국토의 모든 기관을 찾아놓고 이제 우리 3천만 동포는 전력을 다하여 건국대업에 이바지하려는 이때에 사복(私腹)을 채우려는 정치, 경제, 모리배의 출현은 웬일인가?

삼척개발에도 그런 분자의 비인도적 모략으로 허다한 시일과 노력을 허비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그럴 때마다 삼척개발의 각 기관 즉 삼척탄광, 북삼화학, 삼척철도, 목호항운, 경성본사(모두가 삼척개발주식회사의 산하기관들이었다)가 한동 어리로 뭉치어 연락회의를 구성하여 외래 세력을 배척하여 왔으나 신정부가 설 때까지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여겨진다.

남조선 유일의 삼척공업지대의 발전과 조선공업계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이종만 선생님을 맞이하기로 결의했다. 몇몇 대표자가 노력한 결과 선생은 삼척으로써 산업의 표본을 삼고 산업으로써 자주독립의 기초를 삼으려는 대이념하에 노령에도 불구하고 태백산간에 오시는 것을 허락하시었다. 선생이 오신 후에 조선은행과의 1천5백만圓의 차관이 성립되어 종업원은 용기백배하여 가일층 단결하였고, 작업에 매진했다.

그러나 식량문제는 여전히 정치문제에 연관되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 경북지방으로부터 자동차 수송에 의존하여 근근히 연명하여 오던 생명선이 정월(1946년)에 방곡령이 발표된 이후부터 끊어지자 1만3천의 종업원과 가족은 거의 아사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한때 다수인의 위독자까지 발생하여 사회에 호소하고 각 기관에 애원하여 20일간 부산부두에서 쓸어 모은 잡곡으로 연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정의 특별한 노력으로 미군함으로 백미를 들여오게 되자 삼척탄광 뿐만 아니라 영동 3개 군이 소생의 길을 찾았다.

현재도 역시 2홉 반의 배급으로 끊주린 배를 움켜지고 출송탄 작업에 분투하고 있

는 우리 3천인의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조선 사회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종만 선생을 맞이하고 신년(1946년)을 기하여 1월부터 9개월간을 재건 제1차 계획기간으로 하여 우선 주로 저탄을 송출함으로써 남조선 전체의 그동안 자연파괴된 시설과 간도를 복구 정비하고 계획 출탄 준비를 하려 한다.

제1차 계획기간 중에도 이미 간도복구를 완성하고 즉시 채탄 가능한 구역도 있어 저탄과 채탄을 합하여 매월 4만 톤씩 반출할 예정이다.

평양지방의 무연탄광 복구에 2년 이상 시일이 요한다는 조건과 비교하면 삼척탄광이 전국 무연탄 수요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삼척탄광은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1차 계획을 완성하면 즉시 제2차 계획에 들어가 계획출탄 4만 톤을 수행하는 동시에 제3, 제4, 제5차 계획으로 수시 중산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을 완성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식량과 자금은 물론이고 자재확보와 노동문제도 우리에겐 큰 시련을 줄 것을 각오하고 있다. 기술이나 사무는 물론이고, 갑자기 일본인으로부터 접수 인수한 관계로 기술적 빈약과 곤란도 면치 못할 사실이다.

또 한가지 이처럼 준비기간에 시간을 요하는 이유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기 전에 이미 탄광 생산기능을 절반 이상 감축된 정도에 있었고, 쟁내 채굴도 너무나 비양심적인 난굴을 하였던 까닭이다.

삼척탄전의 지질조사는 1928년에 이미 완성하여 그의 우수한 탄질과 무진장한 매장량을 확인하고 있었으나 교통의 불편한 관계로 본격 개발에는 거액의 자금과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므로 일제 재벌도 즉시 개발에는 난색을 표시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침략에 불가결한 준공업의 연료탄과 화학공업, 원료탄으로써 무연탄 대량 공급은 삼척탄이 아니면 안될 형편에 이르러 1936년 4월 삼척개발이 발족한 것이다.

그후 중·미·일 전쟁의 영향으로 더욱 삼척탄광의 긴급 확충 중산계획은 촉진되어 패전 전년에는 삼척탄광 제1차 계획목표인 연산 백만 톤 채굴을 완수하였다. 개발 이후 패전까지 본 탄광을 중심으로 하여 묵호간 광궤(廣軌) 송탄철도, 묵호 항운시설과 축항(築港), 북삼에 화학공업을 합하여 약 1억원의 시설을 남겨 놓았다.

이만한 중대한 시설은 조선 석탄계에 드물 뿐만 아니라 특히 남조선에서는 공업

의 유일한 근원지가 될 것이다. 현재 삼척 일대에 움직이고 있는 몇몇 공업기관은 멀지 않은 장래에 북조선의 홍남공업지대에 손색이 없는 공업조선의 심장부가 될 것을 각 방면으로 입지 조건을 검토할 때 누구나 수긍할 사실이다. 신정부 수립을 목전에 두고 산업, 정치 요인은 삼척에 주목하게 되고 사회는 깊이 삼척을 인식하게 되어 삼척탄광의 중대 사명은 이제 결정되었다.

조선 광공업계의 거인 이종만 선생이 한번 본 탄광에 내임하시자 삼척의 전공업 기관은 일시에 선생의 슬하에 뭉쳤고 삼척 산업단은 공업 조선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그 기초를 닦고 있다.

우리 민족은 너무 오랫동안 가혹한 일제압정 밑에서 한가지 자유도 없던 것이 연합군의 용맹과 우리 혁명투사의 노력으로 갑자기 큰 자유를 찾게 되니 당초에는 황야에 해방된 맹호의 무리처럼 한바탕 날뛰고 싶은 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문화민족의 도량이 각각 자신에게 발생하게 되어 무정부 상태하에서도 도덕과 질서가 있었다.

반면 압박이 너무 커진 관계로 자유 해방의 반동도 그만큼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토록 원하던 언론, 출판, 결사, 신앙을 찾는 동시에 마음껏 일하는 자유도 찾았다. 우리는 이 자유를 다시 잃지 않도록 전심전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항간에는 아직도 각성치 못하고 입으로 정치를 논하고 사상 논쟁을 일삼고 자기의 진실한 직책을 망각하는 분자가 있는 것은 천만 유감이다.

산업전사가 자기의 직장을 망각하고 하물며 기술자까지 중앙으로 모여드는 현 조선의 현상은 과연 어찌 한탄하지 아니할까. 우리 탄광의 지도자와 종업원은 사상의 엄정 중립을 천명하고 오직 산업전사로써 악전고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나 장래에도 우리 3천인의 종업원은 오직 무연탄 생산을 통하여 건국대업에 이바지하며 전심전력을 우리 신국가에 바치려는 굳은 각오에 완전히 결속하고 있다.

산업전사와 기술자는 각기 직장으로 뭉치라. 우리 탄광에도 전 조선에 향하여 우수한 기술자가 들어올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나. 귀속탄광

광복 직후 1945년 9월 7일, 태평양 미 육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포고 제1호

로 38도선 이남 전지역에 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9월 12일 군정장관으로 제7사단장 아놀드 소장이 임명되고 광무국장에는 언더우드 대령이, 한국인 국장대리에는 오정수가 임명되었다.

또한 1945년 11월 2일 발표된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종전 일본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은 9월 25일자로 소급하여 조선군정청 소유로 전환되었다. 이것이 바로 ‘귀속재산’ 속칭 ‘적산’이다. 이로서 일본인 소유였던 광업권과 광업재산 일체는 예외 없이 군정청으로 이관돼 ‘귀속탄광’이 되었다.

군정청은 귀속탄광에 지배인이나 관리인을 임명해 운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종래의 자치위원회 대다수가 해당 탄광의 지배인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광복 전 광산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가운데 최고 직급에 있던 인물들로, 광산의 질서는 다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산을 운영할 만한 경영능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탄광자산의 보수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이었다.

2. 미군정 직할

가. 직영탄광과 석탄광업자금

광복 직후 남한지역의 연료난은 매우 심각했다. 남한지역 탄광의 생산능력은 전국 생산량의 20%에 불과했으나 그나마도 생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1945년 11월 6일 ‘일반지령 제3호’로 석탄을 긴급 생활 필수품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1946년 3월 18일 미군정청은 상무부 지령 제18호로 연료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석탄 증산을 위해 석탄생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 주요 탄광을 상무부가 직영함으로써 석탄 증산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삼척, 화순, 단양, 문경, 은성 등의 무연탄광과 울산, 길원, 영일, 동선의 유연탄광이 이 때 상무부 직영탄광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영월탄광은 그 생산량 전부가 영월화력발전소에 투입되는 관계로 전기국에서 운영도록 하였다.

또한 군정청은 석탄광업자금(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13일 특별내국석탄자금으로 명칭변경)이라는 특별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부족한 연료의 증산을 적극 지원하였다.

나. 조선석탄배급회사 설립

1946년 5월 18일 미군정청은 광무국 직영으로 조선석탄배급회사를 설립, 석탄의 수송판매와 배급업무을 담당도록 하였다. 석탄광업자금 지원으로 시설이 복구되고 생산량이 늘어나자 석탄의 생산과 수송공급의 효율적인 수행을 꾀한 것이다.

정부는 기획과 감독 그리고 자금조정과 집행만을 담당하고, 직영탄광은 선지급된 예산으로 석탄을 생산하며, 조선석탄배급회사는 직영탄광으로부터 인수한 석탄을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급 판매하고 석탄판매대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삼탄가〉

공사창립 이후까지 불리어지던 삼척탄광의 사가인 '삼탄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가사에 포함된 '우리의 탄광', '삼천만 행복', '새나라'라는 단어가 삼척탄광 현지 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한 점에 미루어 1946년 전후 광산 복구와 증산에 매진하며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1. 태백산 등어리요 낙동강 줄기

여기는 삼척이라 우리의 탄광
3억 톤 불이 되어 열을 뿐을 제
이 살림 뻔으리라 삼천만 행복

2. 동해로 가는 배야 뜻을 겉아라

하늘이 주신보배 우리의 선물
한 덩이 또 한 덩이 피땀에 짓어
이 강산 살찌리라 삼천만 행복

(후렴)

싸이랑 들려온다 일터로 가자
오늘도 어제같이 씩씩한 걸음
철암봉 우뚝하다 우리의 기백(氣魄)
정기에 빛나는 새나라 동력

다. 광산물자 배급소 (Mining Supply)

1946년 9월 20일 민정이양이 선포되고 이듬해인 1947년 2월 민정청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초대 민정장관에 안재홍, 상무부장에 오정수, 광무국장에 김기덕이 임명되었다.

민정청은 군정청의 직영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각 탄광의 지배인을 새로이 임명했다. 정부 직영탄광의 지배인으로는 삼척; 이대위(47년 7월 노의근으로 교체), 은성; 백운홍, 화순; 김종두, 단양; 최수봉 등이 임명됐고, 일반 귀속탄광의 경우는 경주; 이상우, 강릉; 이종운, 옥계; 홍승옥, 연천; 김원규 등이 임명되었다.

민정이양 후 광무국에는 광산물자 배급소라는 별개의 기구가 설치되어 광산시설의 복구와 생산력 회복 증강을 도왔다. 초기에는 광무국 서무과에서 전쟁시 미군이 사용하던 차량과 군용물자 및 식료품 등 잉여물을 미군정청으로부터 무상 중여받아 이를 각 광산에 배정 공급하였다. 그러나 물량이 증가되고 종류도 다양화되어 업무가 과중해지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광산물자 배급소를 통해 공급된 물자 중에는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면서 일본군으로부터 접수한 군복류, 군화류까지 있었는데 궁핍하던 당시로서는 대단히 긴요하게 쓰였다. 무엇보다도 탄광 복구와 개발에 긴요하게 쓰일 3/4톤, 1톤 트럭, 2.5톤 GMC, 불도저 등 차량 100여대가 공급되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광산물자 배급소는 자체 보유장비로 현동 장성간 도로 확장 및 대한중석과 *만항탄광간 자동차 도로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만항탄광의 경우, 종전에는 일부가 등짐을 지고 정암에서 상동까지 험준한 산악과 협곡을 걸어서 운반해야 했을 만큼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던 곳이었다.

3. 정부직영

가. 심각한 연료사정

광복 전 석탄생산의 80%를 북한지역이 담당하여 왔던 상황에서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자, 남한은 그야말로 최악의 연료난에 봉착한다. 민수용 난방연료는 장작과 숯

〈삼척개발주식회사 이종만 사장〉

광복 직후 삼척개발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종만은 당대 광업계의 최고 거인이다. 일찍이 대명금광으로 큰 돈을 벌어 국내 광산기술자 양성의 절실함을 깨닫고 대동공전(김책공대의 전신)을 설립,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국 광업발전의 기초를 다진 민족자본가였다.

광복 후 그가 월남하자 직원들은 그를 삼척개발주식회사 사장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대동공전을 잊을 수 없어 조용히 월북하게 된다. 당시로선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면하기 힘든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종만 사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그가 국내 광업발전에 기여한 족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광복 후 국내 광업계를 아끈 인사들 중 상당수가 대동공전 출신임을 감안할 때, 그는 분명 한국 광업의 개척자중 한 사람임에 틀림 없다.

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서 산림 훼손은 심각한 정도에 달하여 나날이 민등산이 늘어갔다. 미군정 당국의 필사적인 석탄증산 노력에 불구하고 생산량은 철도용, 발전 용 수요의 30% 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1947년 11월 급기야는 연료부족으로 인해 철도운행이 중단되게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1948년 5월 14일 북한이 남한지역에 대한 송전을 돌연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온 북한은 5월 10일 예정대로 남한지역 총선거가 실시되자 북한에 편중돼 있던 전력시설을 무기로 들고 나왔다. 5월 14일 오전, 북한 전기총국장 이문환은 조선전업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약정된 남한의 송전요금을 미국측이 청산하지 않으므로 대남 송전을 단전코자 한다. 만약 한국인 동족끼리 해결할 의사가 있으면 평양으로 오라.”

그리고 1시간 30분 뒤인 정오를 기하여 북한은 남한지역에 대한 단전을 단행하였다. 한반도 38도선 이남은 일시에 암흑으로 변하고 말았다.

북한의 송전 중단에 대비해 1948년 2월과 5월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발전함 자코나호(2만kW)와 일렉트라호(6천9백kW)를 도입하여 비상공급체계에 돌입하였으나 부분적 응급조치에 불과했다.

이 발전함 2대 외에 당시 남한의 발전시설이라고는 영월화력발전소가 고작이었고, 그나마 영월발전소는 풀가동 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월 4~5만 톤의 소요량에 비

해 영월탄광의 생산량은 월 2만 톤 수준으로 절대량이 부족했다. 모자라는 연료를 삼척탄광에서 조달해오고자 해도 철도나 도로가 없어 육상수송이 불가능했다. 결국 미군 LST를 동원, 목호항에서 선적하여 남해를 돌아 인천으로 운반해간 후 다시 철도로 영월발전소까지 수송해야 했다.

나. 시설복구와 증산준비

남한 단독정부 수립 후 정부는 석탄증산을 시급히 이루고자 막대한 탄광 복구비를 투입하였다. 무엇보다 발전력 증강을 위해 영월탄광 복구에 힘쓰는 한편, 영월발전소 연료원이 되어줄 함백탄광의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1948년에는 86만9천 톤, 1949년에는 113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여 광복 전 남한에서의 생산량(144만 톤)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기초조사 없이 막대한 자금의 56%를 영월 함백지구에 집중 투자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무계획적인 시설투자를 무리하게 감행하여 결과적으로는 생산원가의 과중을 초래하였다. 또한 탄광 복구자금 중 56%가 토건공사비로 사용된 것도 문제였다. 이는 종업원의 증원에 따른 사택보수와 신축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간접생산시설에 투자가 집중되고 직접증산을 위한 투자는 40%에 그쳐 결국 탄광복

미 군정하의 탄광시설 보조금

(단위: 천圓)

항목	직할탄광	민영탄광	계	비고
송전시설	16,000		16,000	삼척~북삼 송전
변전시설	2,500		2,500	삼척
도로운반시설	2,171	2,800	4,971	
탐광장려비(1차)	1,400	340	1,740	m당 1000圓
" (2차)	550	350	900	"
출탄장려비(1차)	42,569	1,446	44,015	톤당 100圓
" (2차)	14,842	857	15,699	"
토건공사비	96,000		96,000	삼척탄광
"	20,000		20,000	화순탄광
"	10,000		10,000	은성탄광
합계	206,033	5,792	211,826	

구비 지원책은 소기의 생산효율을 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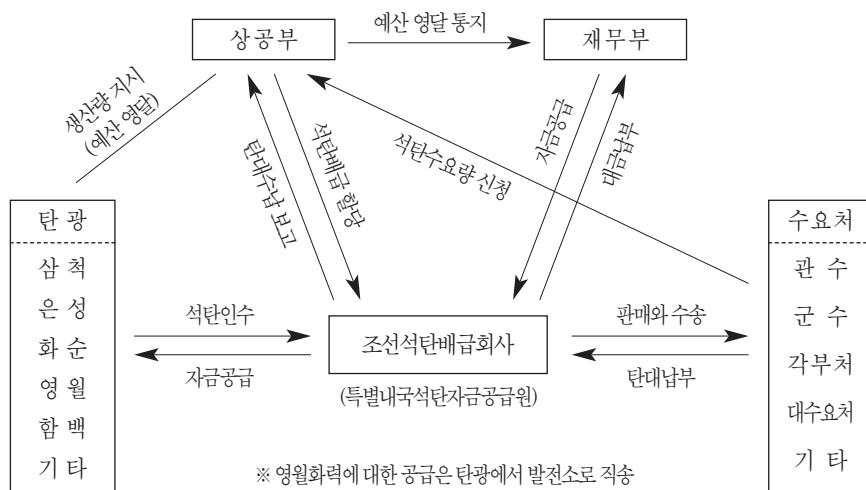
다. 덕대개발 추진

석탄증산이 절실히 요구되자 국가 소유의 탄광을民間에 불하하여 개발을 촉진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실력자를 앞세워 로비를 하는 등 국유탄광을 불하받고자 하는 민간의 경쟁도 치열했다.

상공부 광무국은 1948년 각 도의 귀속광산을 중앙정부로 이관시키고 종전의 관리인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덕대인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민간업자에게 소정의 덕대료를 내고 광산을 개발, 채굴도록 한 것이다.

당시 가행 중인 탄광은 삼척, 영월, 화순, 은성, 문경, 단양, 삼홍(화순지역), 연천, 예산, 김포, 대화(전남 보성) 등 무연탄광과, 울산, 길원 영일, 신한(영일지역) 등 유연탄광으로, 모두 20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덕대 개발이 인정되자 개발이 급속히 촉진

특별내국석탄자금제도에 의한 운영체계도



되었다. 1951년 11월 당시 전국 121개 광산에 2백여 광구가 덕대 허가를 받아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덕대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광업법령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덕대인을 광업대리인으로 변경하였고, 귀속광산을 국유화한 후에는 보광인으로 개칭하는 등, 국유광산이 민간에게 불하될 때까지 혼선을 빚었다. 그러나 탄광개발과 생산에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주어 석탄생산 증가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였음은 부인

할 수 없다.

4. 국영개발

가. 공사 창립

정부 수립 후 경제활성화가 시급해지자 정부는 대부분의 귀속재산을 민간에게 불하했다. 그러나 탄광은 헌법상 개인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데다 탄광을 인수 할 만한 민간자본이 아직 성숙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또한 당시의 연료사정이 민간자본의 성숙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는 석탄개발만은 국가 직영체제를 고수하였다.

하지만 정부 직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생산은 직영탄광이 담당하고 공급은 국영기업인 석탄배급회사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조달, 판매활동 등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1950년 11월 국영기업체인 대한석탄공사를 설립, 생산과 공급을 담당도록 하는 한편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나. 귀속재산을 국유로 전환

정부는 공사를 창립하여 정부직영 사업체를 공사에서 일괄 운영토록 하였으나, 해당기업의 재산권(귀속재산)은 공사로 이관하지 않고 국유재산으로 전환했다.

1951년 3월 31일 공포된 국무원 고시 제12호와 1951년 5월 29일의 국무원 고시 제13호를 통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공포했다.“ 조선무연탄배급회사 등 공사 운영사업체로 지정된 사업체에 대해 그 귀속성을 탈락하고 해당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지정 고시한다”.

또한 정부는 광업법 제정 후의 모든 귀속탄광의 광업권을“ 국(國)”으로 등록, 국가 소유로 전환했다. 이러한 광업권의 국유화 조치는 광업법의 잘못된 해석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5. 석탄증산 기반 조성

가. 탄광개발 지원

휴전 이후 국가재건을 위한 첫번째 과제는 연료난 타개를 위한 석탄의 증산이었다. 이에 정부는 1954년 6월 2일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 또는 국제연합한국부 흥위원회: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와 '탄광개발협정'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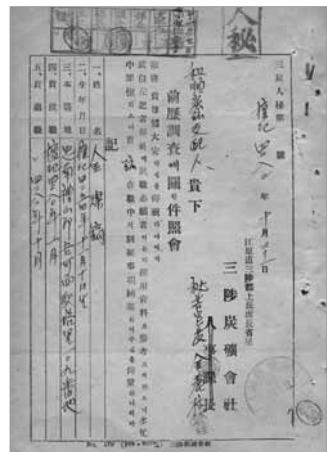
UNKRA는 먼저 공사 산하 광업소의 시설 복구사업에 개발지원금을 제공하고, 이어 민영탄광에도 개발지원금을 제공하였다. 1953~1955년 3년 동안 공사에 639만8천 달러, 민영탄광에 155만8천 달러(강원탄광, 옥동탄광 등 7개 탄광)의 개발지원금이 투입되었다. 또한 기술원조금 55만9천 달러도 제공되어 기술인력 양성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총 1495만 달러의 지원금을 국내 석탄산업에 투입한 UNKRA는 1958년 6월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철수했으며, 이후 잔무는 ICA가 인수하여 마무리하게 된다.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미 국제협조처)는 1955년 7월 설치된 미 국무성의 산하외성으로, 미국 정부가 우방국가에 대하여 경제원조 및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ICA는 후에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 국제개발처)로 개편되었다.

UNKRA와 ICA의 원조사업은 개발지원금 교부에 그치지 않고 1958년 KOMEP사업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이는 미군의 잉여물자 중 광산개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물자와 기재를 공급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진공업국의 최신기계화 장비, 시설재, 탐사법 등이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KOMEP 사업은 탄광 개발 기술사적인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나. 석탄산업철도 부설

광복 이후 석탄 개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석탄수송철도의 미비였다. 이에 정부가 석탄 증산을 추진하며 가장 먼저 착수한 것 중의 하나가 석탄수송을 위한 철도의



▲ 삼척탄광 인사 서류

부설이다.

정부는 1949년에 영암선과 함백선 부설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중단되고 만다. 그해 2월 영암선은 착공 10개월만에 영주 내성 간 14.1km 구간을 부분 개통한 상태였고, 함백선은 49년 11월 제천 송학간 9.8km 구간을 부분 개통한 상태였다.

영암선 공사는 휴전 후 1953년 9월 28일 재개되었다. 육군 공병대의 지원하에 1년 여 공사 끝에 1955년 12월 31일 마침내 영주 철암 86.4km 구간이 준공되었다. 문경 선(점촌 은성)도 1955년 9월 1일 개통식을 가졌고, 함백선도 1953년에 공사를 재개하여 1957년 3월 9일 개통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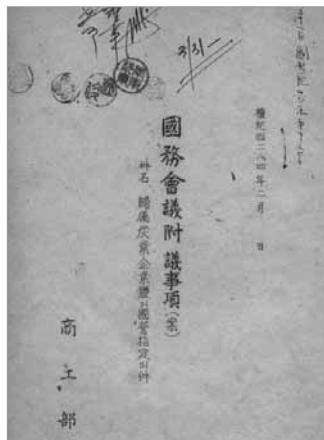
이같은 석탄산업 철도의 부설은 국내 석탄산업의 일대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 영

정부수립후 탄광별 복구비 지원액

(단위: 천圓)

탄광	토건공사비	기전공사비	굴진공사비	계
삼척	532,000	152,000	155,000	839,000
영월	283,000	86,000	155,000	524,000
화순	141,000	60,000	26,000	227,000
은성	89,000	1,000	12,000	102,000
단양	40,000	36,000	15,000	91,000
문경	62,000	8,000	13,000	83,000
함백	649,000	300,000	227,000	1,176,000
울산			20,000	20,000
계	1,696,000	643,000	605,000	3,044,000

암선의 개통은 국내 최대 탄전인 삼척탄전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전기가 되었다. 엄청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강원도 일대의 탄광들이 철로의 개통으로 새로운 투자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었다. 영암선 개통 이전에는 배로 나흘이나 걸리던 수송기간이 개통 이후에는 철암역에서 바로 청량리 역까지 단 하루로 단축됐고, 비용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 국무원 고시 제13호

〈당대 최대의 난공사였던 영암선 부설 공사〉

영암선의 부설공사는 한국 철도사에서도 손꼽히는 난공사였다. 철도청에서 발간한 '한국 철도사'에 그 어려움이 잘 드러나 있다.

"온통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첨협의 산맥을 뚫어야 하는 영암선. 경제적으로는 외원을 필요로 했고 시멘트, 다이너마이트, 강재 등 국내 생상품이 부족했다. 중량품의 기자재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도로마저 없어, 원시림과 계곡에 방대한 물자를 운반할 가도로와 가교를 가설해야 했고 전력을 수십 km 밖에서 끌어와야 했다."

재료는 봉성역에서 트럭으로 춘양을 거쳐 노릇재를 넘어 낙동강 계곡을 따라 가설된 17km의 가도로를 이용하여 트럭이나 지게로 운반되었다. 궤도용 레일, 침목 등 기타 자재는 춘양에서 현동까지 육로로 수송하거나 또는 부산 북호항의 해상로를 거쳐 삼척철도 인크라인으로 철암역까지 회송되기도 했다.

영암선 건설공사는 악전고투였다. 교량 55개를 비롯, 해발 450m 높이에 위치한 길이 971m의 임기 제1터널, 길이 698m의 춘양터널등 총 33개에 이르는 터널이 총 8312m나 되었다. 당초 1956년 봄에나 개통하려 했으나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으로 1955년 말 완공을 강행했다."

영암선은 1955년 12월 31일 준공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운행은 1956년 1월 16일에 가서야 이뤄졌다. 이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통령이 1955년 중으로 완공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기 때문으로, 당시 영암선의 건설이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